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2. 10 선고 2022가단11065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은총, 이승헌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2. 23.

판 결 선 고 2023. 2. 1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20. 7. 8.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그 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하였다.

나. 2003. 6. 30. 무렵 C의 신용카드 대금 연체액은 5,612,830원에 이르렀고, D의 C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 원금 5,612,830원 및 이자(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순차로 양도된 후,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양도시기	양도인	양수인
2003. 7. 31.	D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G 유한회사
2007. 5. 7.	G 유한회사	H 유한회사
2007. 5. 8.	H 유한회사	F
2011. 4. 26.	F	I 유한회사
2019. 2. 22.	I 유한회사	원고

다. F은 2008.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전15781),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소송절차로 회부되었으며, 위 소송은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어 위 법원은 2008. 12. 9. ‘피고(C)는 원고(J)에게 12,101,434원과 그 중 5,612,830원에 대하여 2008.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하여, 위 판결은 2009. 1. 3.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306668,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라. I 유한회사는 관련 판결에 기하여 2018. 3.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타채1551).

마.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에 C을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의 2020. 9. 25.자 지급명령은 C에게 2020. 10. 7. 송달되었고, 2020. 10. 22.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20차전2821).

바. 피고는 C의 형제로서, 피고와 C의 모 K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5. 1.자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한편,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에게 대하여 24,190,42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성립한 C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 전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참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3435 판결 참조), 피고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도과하기 전인 2003. 6. 30. 기준 C에 대하여 원금 5,612,830원 및 이자 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바, 이는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가 관련 판결의 당사자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판결 확정으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고, 관련 판결 확정일인 2009. 1. 3.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8. 3. 20. 유한회사가 관련 판결에 기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2018. 3. 20.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할 때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하여

24,190,423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자 C이 이 사건 분할협의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인 1/5 지분을 포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C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모친 K를 사망 시까지 부양한 것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에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C의 상속지분인 1/5 지분에 관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나 전득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수진

별지